

2 휴직

지원대상

- 휴직의 의미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 경우 휴직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된 '휴업'의 개념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두가지 유형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 '22.12.31.까지 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인정(단, 해당 보험연도 기간 중에 180일까지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함)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식전 3개월 평균, 식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보험연도익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나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 다만, 코로나 위기 심화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까지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한시 연장(90일)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월 50만원을 정액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일반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휴직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1일한도 6.6만원	

* '22.12.31.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 지원절차

-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 고용유지소지 30일선 까지 관할 시방관서에 소지계획서 제출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심사과정

- 심사위원회(관할 청 및 제주고용센터) 승인 필요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소재지 관할 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관할 청)
 - 심사위원회 개최(관할 청별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지원요건

- 청년: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아래 요건 해당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인 자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 ② (기업→청년) 2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받아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
 - *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30인 미만' 기업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자부담
 - ③ (정부→청년) 정부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적립구조

만기공제금	본인적립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본인부담)	300만원 지원 (기업규모별 차등 자부담)	600만원 지원 (정부적립)

신청절차

- (가입 신청)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심사·선발 → 청약 가입신청(www.sbcplan.or.kr)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 신청) 청약가입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3→8번)
-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홈페이지 공개)으로 문의

2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20.12.1.~'21.12.31.에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③,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④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임.

③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④ (신청기한) '20. 12. 1.~'21. 12. 31. 기간 중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기한이 '22년도에 속하는 경우 '22년에 신청 가능

(예시) '21.8.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22.2.9까지이므로 '22.3.1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인위적 감원 금지(참여신청 1개월 전~지원금 지급기간)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신청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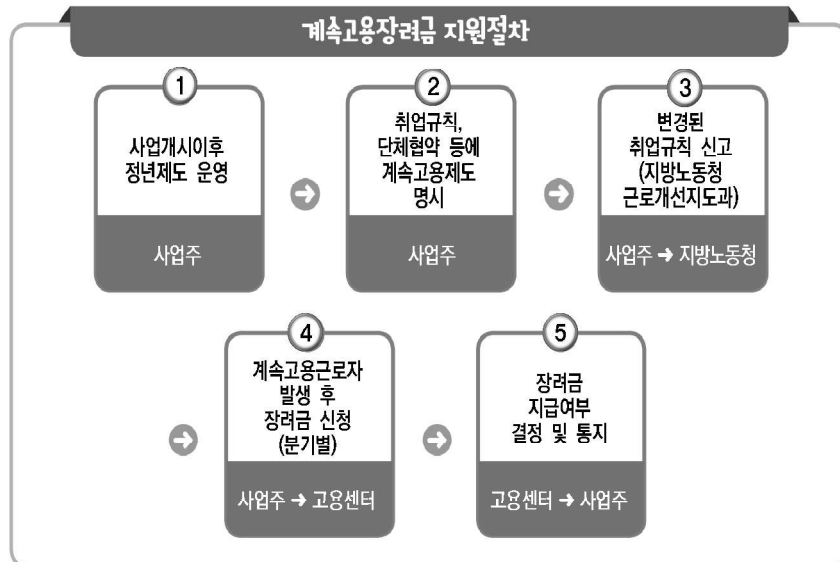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①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이내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5

고령자 고용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기업요건)

-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② 60세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월 평균 근로자 수)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로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거나
-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초과하여 계약한 사람

*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지원수준 및 기간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내역	지원한도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21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86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52만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이상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지원금(월)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무상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 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용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용자 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등
- 용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제(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031-728-7065)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간(최대 3년)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치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5/10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지원유형: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에 참여하여야 함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문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V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2.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경남 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2.12.31) ⑦목포시·영암군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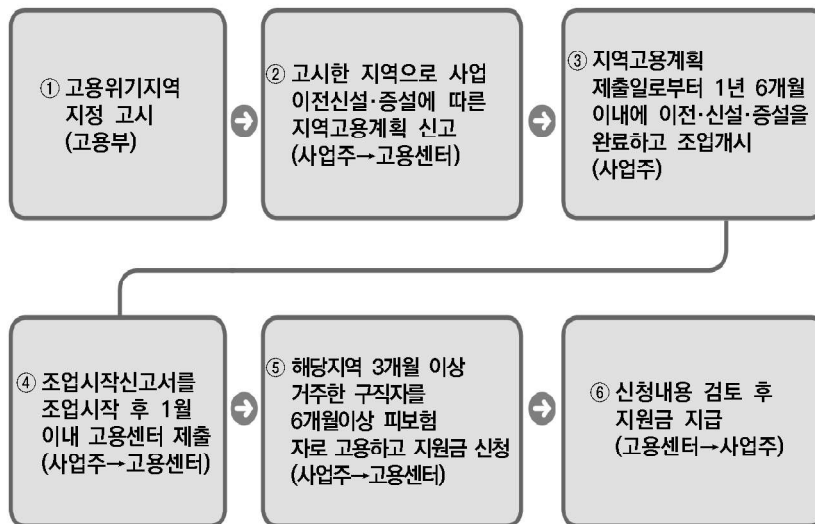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1일 상한액은 6.6만원)

지원요건

-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 지원 제외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절차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